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에 관한 연구

— 세무조정과 수정회계를 중심으로 —

이 경 오*

〈목 차〉

- | | |
|---------------------|------------------------|
| I. 서 론 | 2. 세무부인금의 유형 |
| II. 세무조정 의 이론적 배경 | IV. 세무조정과 수정회계처리 |
| 1. 세무조정 의 의의와 필요성 | 1. 세무조정과 수정회계처리 의 세법제도 |
| 2. 세무조정 의 분류 | 2. 세무조정과 수정회계처리 |
| 3. 세무조정 의 일반적 기준 | V. 결 론 |
| 4. 세무조정 의 효과와 한계 | 참고문헌 |
| III. 세무부인금 의 특성과 유형 | Abstract |
| 1. 세무부인금 의 특성 | |

I. 서 론

기업회계는 기업 그 자체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회계이고, 또 그 기능도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조세부담능력 의 측정기준인 과세소득을 공평, 타당하게 계산하여 납세기간에 있어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케 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라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의 기업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은 비록 동일한 원시기록을 통해서 측정되고는 있으나 실제 양회계의 목적과 기능은 상이하므로 제각기 고유의 독립된 영역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영산대학교 아시아비즈니스학부 조교수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양회계가 서로 혼용되어 순수한 기업회계만을 위한 회계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단순히 과세소득을 위한 회계처리도 아니다.

특히 현행법규로서의 조세법규가 기업회계에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보아 오늘날 기업내의 회계가 세무회계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정확한 경영평가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기업회계의 이념에 맞추어서 모든 회계처리를 행한 후 세무조정이란 부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의존관계에 있지만 기능상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세무회계에 이어 과세소득을 구하는 과정의 기업이익 차이점을 연구한 세무회계의 입장을 참고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극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연구해 보았다. 즉,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각각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손상치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세무회계를 접근시켜 양자의 차이를 극소화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세무신고 시 아주 세밀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 소득을 산출했다하더라도 사후에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서 세무부인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신고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자기조정으로서 세무조정의 체계적 원리 수립과 정부당국의 세무조정에 따른 세무부인금 수정 회계처리의 합리적 방법을 도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독자적인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회계의 차이를 되도록 가깝게 접근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문헌과 정부간행물 및 국세청 자료, 월간세무사협회 간행물을 통하여 분석 검토되었으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조정에 관련시켜 수정회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범위로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을 비교 분석해 가면서 양회계의 차이점 해소를 분석 고찰한다.

Ⅱ. 세무조정 의 이론적 배경

1. 세무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1 세무조정의 의의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비하여,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과 세액산정에 관한 재무적 보고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상의 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소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정확한 과세소득과 세액산정을 위하여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환언하면 세무조정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손익이 세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과소계상 되어 있는 부분은 가산하고 반대로 과대계상 되어 있는 부분은 차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기간손익에 가산할 사항에는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항목이 포함되며, 기간손익에서 차감 할 사항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항목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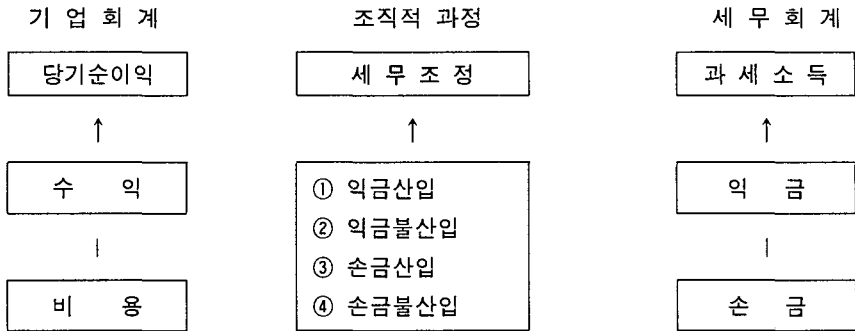
즉, 결산시 당기순이익->세무조정->과세소득의 계산과정을 거쳐서 세무회계에 있어서의 그 종착역인 세액이 산출된다. 그런데, 세무조정에는 현행법인세법상 다음 네 가지 사항이 있다.

즉, 그것은 (1) 익금산입사항 (2) 익금불산입사항 (3) 손금산입사항 (4) 손금불산입사항 위의 네가지 사항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해야만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조정과정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수익(기업 회계상의 수익)} + \text{익금산입액} -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익금} \\ & \text{비용(기업 계산상의 비용)} + \text{손금산입액} -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손금} \\ & \text{익금} - \text{손금} = \text{과세소득} \end{aligned}$$

위의 산식을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적 과정

1.2 세무조정 필요성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정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거쳐서 유도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또, 양 회계가 제각기 기능과 목적을 구축하면서 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하려는데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 회계처리 면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기업 회계상의 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을 혼돈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연결하는 세무조정의 정확한 내용과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업회계로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공평 타당한 과세소득산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양회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적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2. 세무조정의 분류

세무조정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조정을 의미하며 정부가 세무조사시에 하는 조정도 세무조정이라 할 수 있다

2.1 자기조정, 외부조정, 정부조정

이것은 조정주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자기조정이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법인세법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자기조정이라고 한다.

정부조정이란 세무조사시의 조정을 정부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은 넓은 의미의 자기조정에 속하지만, 좁은 의미의 자기조정과는 구별되는 외부조정인 것이다.

2.2 결산조정, 신고조정, 결정조정

이것은 절차상의 특색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양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을 인정하는 사항인 결산조정이라 한다.

반면에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 확정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손금과 익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 조정이라 한다.

결정조정이란 세무당국이 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행하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2.3 가산조정, 차감조정

세무조정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감조정이다. 이는 기업회계의 결과에 대해서 가산계산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을 가산조정이라 하며, 기업회계의 결과에 대해서 차감계산을 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을 차감조정이라고 한다.

세무회계의 실무는 결과적으로 이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세무조정의 일반적 기준

3.1 총익금, 총손금에 의한 소득금액의 조정(법인세법15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익금)의 총액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손금)의 총액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3.2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인식기준)에 의한 조정(법인세법 40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인식기준은 법률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익금은 수

익의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3.3 조세 정책적 기준에 의한 조정

기업회계와는 달리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기업 회계상 수익이 아닌 것을 익금으로 하거나, 수익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손비가 아닌 것을 손금으로 하거나, 손비 중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세무조정의 효과와 한계

세무조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의 결산이익을 현행법인 세법상의 규정에 적합한 과세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산과 감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무조정은 스스로 한계가 있어서, 이미 언급한 것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과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가능한 한 결산조정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현행 법인세법이 만약 결산조정 사항을 전폐하거나 축소한다면 그만큼 결산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세무회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세법자체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약간의 결산조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요컨대, 세무회계의 특수성과 실질적 견지에서 기업에게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조정 절차를 강요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법인세법의 규정한도에서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세무조정 절차상의 임무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Ⅲ. 세무부인금의 특성과 유형

1. 세무부인금의 특성

세무부인금은 그 성격에 따라서 수정처리의 여부를 채택해야 한다. 즉, 세무부인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면 다음 사업연도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한, 이것은 회사 계산 외에 세무적입금을 구성하게 되

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있어서는 이 세무부인금은 회사계산에 받아 들였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한다. 회사는 세무계산상의 부인에 대해서 이를 수정회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그 원인과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요컨대, 세무부인금 중에서 수정회계처리를 반드시 요하는 결산조정 사항과 수정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신고조정 사항이 있다.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세무부인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를 이행해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다시 부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신고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에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보로 처분된 부인금은 세무계산상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그 부인금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면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추인되는 부인금은 부인금 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세무계산상 추인계산을 할 수 있는 추인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한 분(分)에 대해 부인된 경우와 둘째, 장기간에 걸쳐서 추인되는 부인금은 부인을 당한 사업연도 이후의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세무계산상의 조정을 요하는 부인금으로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인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장래에 추인될 기회가 없는 부인금은 한번 부인금으로 부인되어 유보로 처분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일단의 수정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추인되지 않는 성격의 부인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을 세무조사시 자본적 지출로 판단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부인하고 유보 처리한 경우와 넷째, 차기에 자동적으로 추인되는 부인금은 일단 유보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차기에 자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인금을 말한다. 예로서, 세무조사시 지급이자, 보험료 지대, 집세 등의 미경과분을 부인하고 유보처리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2. 세무부인금의 유형

세무계산상 부인의 원인은 순자산 증감이라는 사실로서 파악할 경우 순자산 증감의 원인을 회계학상 자본등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지 자산의 세무계산상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부인금은 문제가 되지만 감액되는 부인금은 과오납환

금의 문제가 따를 뿐 세무회계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부인금의 유형만을 구분해 보기로 하자.

첫째, 자산의 감소에 의한 부인금은 자산의 계산 누락 과소평가 등을 한 경우에 대한 부인금이며, 둘째 부채의 증가에 의한 부인금은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및 미지급금 등의 부채항목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됨으로써 해당되는 부인금이다.

셋째, 이익의 감소로 인한 부인금은 수익을 과소 계상해서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매출액을 계상하는 시기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로 인해 부인하는 경우와 매출액 계상을 누락하거나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의 부인금 등이 있다.

넷째, 손실의 증감에 의한 부인금은 손비를 과대 계산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경우로 손금불산입사항을 손금산입하거나, 제충당금 준비금의 한도액을 과대 계상한 경우의 부인금이 이에 속한다.

IV. 세무조정과 수정회계처리

1. 세무조정과 수정회계처리의 세법제도

세법이 지향하는 최대의 이념은 세원의 확보이며, 기업이 어떠한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근거과세를 통해서 세원확보라는 입장에서 기업회계의 장부를 참고자료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수정회계처리는 거래가 발생된 후 그것을 기장 처리한 다음, 다시 장부를 수정할 필요가 생길 때 행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여기서 고찰하고자 할 것은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무조정사항에 관한 수정회계처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세법은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장 내용이나 요령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회계처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회계처리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 기업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시기록을 가지고 기업회계과정과 세무회계과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먼저 건전한 기업회계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업회계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고, 세무조정이라는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의 측정”을 함에 있어 세무부인금의 종류 중 기업의 장부상에 반영해 기업회계와의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정회계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기업회계상의 원천적인 회계처리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유보금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회계처리가 이행되어야 한다.

2. 세무조정과 수정회계처리

현행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세무조정 및 경정결정, 조사결정사항에 대한 수정 회계처리의 필요성 여부와 또한 그 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실무상 객관성과 통일성을 잃는 회계처리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법상에 시급히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혼란을 피하게 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성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도출, 명문화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보다 쉽게 접근될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무담당자 및 학계에서 이 문제처리에 대하여 견해가 구구한바,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조정 및 경정결정 후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회계기간에의 언급, 즉 사업연도가 바뀐 연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무처리가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편의상 자기조정 회계처리와 경정결정후의 회계처리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2.1 자기조정회계 처리

기업이 세무조정을 행한 다음 조정회계처리를 하려면 이미 마무리된 회계장부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세법규정을 잘 살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회계처리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조정회계처리를 하든 아니하든간에 세무조사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조정 회계처리의 실질이익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을 거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재무제표가 완결된 연후(물론 결산 조정은 필한 것임)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정(신고조

정을 의미함)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신고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정도로 마무리 되었다고 가정하여야지 그것을 기장할 수도 없고 또한 기장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2.2 경정결정후의 수정회계처리

세무조정에서 지적된 사항, 경정결정시 부인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이 기업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느냐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수정회계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세무지적사항 및 부인된 기업회계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혀 수정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철두철미 분리시키자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모든 지적 내용은 결정결의서나 제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업이 수정회계를 처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은 필요한 사항을 우선 하여 처리해 두었다가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원한다면 이 방법을 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 세무지적사항은 모두 수정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동일시 내지 혼동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장부에 반영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다시 두 갈래의 견해로 나누어진 다. 그 하나는 유보로 처리되는 지적사항은 해당 손익계정과 해당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수정하되, 사외유출로 처리되는 지적사항은 해당 손익계정을 세무조정계정과 대응시켜 수정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감가상각비의 범위초과액이 부인되었을 경우, 이는 유보에 해당하므로 (차) 감가상각충당금 XXX (대) 감가상각비 XX와 같은 식으로 수정회계처리를, 그리고 접대비를 부인당한 경우는 기타 사외유출이므로 (차)세무조정 XX(대) 접대비 XX과 같이 처리한다.

그 두 번째는 모든 적출사항의 손익항목을 (조정)자가 붙은 계정과 대응시켜 수정하자는 방법이다. 예컨대 감가상각비부인의 경우는 (차) 감가상각비조정 XX (대) 감가상각비 XX 와 같은 식으로, 그리고 접대비부인의 경우도 (차) 접대비조

정 XX (대) 접대비 XX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자는 방법이다. 이들 방법을 택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다.

셋째, 세무지적사항 중 유보로 처리된 것은 수정회계 처리하되, 사외유출로 처리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구별하되 세무회계에 상관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유보사항을 수정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차) 감가상각비 XX (대) 전기손익수정익 XX와 같은 식이다.

대변과목을 전기손익수정익 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미 기업회계장부가 마감되어 버린 연후일 뿐만 아니라 수정의 결과 순손익이 변동된 내용들도 전기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견해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어 셋째의 견해가 타당한 견해라 생각한다.

따라서 유보로 처분된 지적사항은 예외없이 다음절차에서 어떠한 세무상의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이므로 그것에 대비하여 미리 명확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사외유출로 처분된 사항에서는 신고서 및 결의서 사본만 작성해 두면 될 것이다.

V. 결 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양자가 서로 독자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양립하고 있지만, 이들은 동시에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면에서는 상호간 상대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양회계가 혼합된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회계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순수한 기업회계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회계를 연결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 볼 때 적절한 세무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따라서 양회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해 요인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무신고서를 위한 조정과정에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즉,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을 혼동함으로써 세무신고서 신

고서상에 조정 가능한 단순한 신고조정사항을 결산조정사항으로 취급해서 기업회계장부에 회계처리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단순한 기능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세무부인금에 대한 수정회계처리에 대해 그 수정의 필요여부와 수정방법 등이 기업회계 기준이나 세법에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실제 실무 면에 있어서도 그 차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이 없어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 무부인금은 그 귀속이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구분되는데 사외유출은 그 실체가 사외로 이미 유출되어 수정회계처리의 여지가 없으나 유보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인금은 그 특성에 따라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회계 처리는 불가피하게 된다.

셋째, 경영자와 회계담당자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아울러 자질향상과 각성이 필요하다.

막연한 세법절대관이나 기업회계 경시관에 사로잡혀 기업회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회계의 차이는 양제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결과이며 이를 하나로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본질과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이점을 상호보완 접근시키는 것이 회계처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업무능력을 합리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를 좀더 진실하고 건전하게 다져 나가야 하는데 부합되는 길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세법이 요구하는 과세소득이 계산되도록 세법개정에 의한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고승의 · 김완희 · 정영기 · 최정호 · 최현돌(2003), 기업회계기준서 해설(1), 신영사
2. 김면규 · 이기생(2004), 세법총론, (주)영화조세총람
3. 김성기(2003), 기업회계기준해설(상), 다산출판사
4. 김영덕(2004), 기업회계기준해설, 세학사
5. 김영수(2004), 세법원리, 세학사
6. 류동현(2003), 기업회계기준해설, 상경사
7. 박인주 · 오영 · 홍정화(2002), 기업회계기준, 무역경영사
8. 반선섭(2002), 기업회계기준서, 신영사
9. 서희열 · 심충진(2004), 세무회계연습, 세학사
10. 선병완 · 최강득(1999), 세무회계강의, 무역경영사
11. 세무경영컨설팅(2001), 기업회계기준편람, 한국세무경영사
12. 세무회계연구(2003),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
13. 한국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2001), 세무효과 회계론연구
14. 유재규 · 손상익(2004), 신기업회계기준해설 (주)영화조세총람
15. 윤금상(1999), 신기업 회계기준, 두남
16. 이기현(2000), 기업회계감사, 법문사
17. 이기현 · 김영태(2002), 현대 기업회계원리, 법문사
18. 이만우 · 정재연 · 노준화(2004), 세법개론, 세학사
19. 이영태 · 김은수 · 김상필(2004), 세무회계1, 세학사
20. 이영태 · 김은수(2000), 새세무회계1, 학문사
21. 이준규(2004), 새세법개론, 영화조세총람
22.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영사
23. 이호섭 · 권순철 · 권순창(2004), 세법개론, 신영사
24. 전우성(2004), 최신 세법강의, 대명
25. 최경수(2004), 기업회계기준서해설, 삼일인포마인
26. 최경수(2000), 세무회계론, 지문사
27. 최명근(2004), 세법학총론, 세경사
28. 최입수(2004), 세무회계뱅크, 경영과 회계
29. 최종일 · 유홍관 · 홍사균 · 정춘선(2004), 세무회계 삼일회계법인

30. 한국세무사회(2004), 법인세신고안내
31. 함영복(2004), 최신 세법총론, 북마스터
32. 회계와 세무해설(2004), 2월, 삼일인포마인
33. 회계와 세무해설(2004), 3월, 삼일인포마인

Abstract

A Study on the Adjustment between a Corporate Account and a Taxation Account

Lee, Kyong-oh

As a corporate and a taxation account have relationships each other, one cannot be ignored by the other from concrete and excepted points of view. In reality, as they are mixed and the taxation account has been regarded as absolute, we cannot deny that the role of a pure corporate account is intruded by taxation accou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both should be adjusted in order to develop their own roles between a corporate account and a taxation account.

In order to develop the both accounts soundly, we should solve the problems as follows.

First, we should discriminate closing adjustment affairs from reporting adjustment ones, in the process of adjusting for taxation report.

Second, the manager and the accouter need to comprehend on the origin and reality of a corporate and a taxation account and improve their capacity of accounting.

Finally, as the goals which both aspects seek for are different, it is difficult to meet each other. But it will be a shortcut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developing the accounting systems of Korea, to compensate the differences each other.

In conclusion, this writer suggest that the corporate accounts should be treated according to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 and taxation law has to be reformed so that taxable income may be counted based on the former assertion.